

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03. 14(금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02. 28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. 02. 28

라. 상정일자 : 2014. 03. 14(제2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오병집 안전행정국장
- 검토보고 :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세특별제한법」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감면기간을 연장함.

나. 주요골자

-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(안 제3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.) 제38조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, 취득세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 경우 적용하던 취득세 감면기간에 대하여 기존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한 사항을,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바, 관련된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이용범, 이강호, 이상철, 홍성욱 위원
- 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4명, 찬성 : 4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: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2013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14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(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)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<u>2013년 12월 31일까지</u>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</p>	<p>제3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14년 12월 31일까지</u> ----- -----.</p>